

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(임오경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17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9. 23.

발 의 자 : 임오경 · 한민수 · 장철민
박 정 · 윤준병 · 김남희
허성무 · 이소영 · 서영교
서미화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어린이집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('24.6)되었지만 유보통합 세부계획 미확정으로 현장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음.

유보통합 실현의 실질적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명칭 및 사용 용어 통일 마련이 전제되어야 함.

이에 「영유아보육법」과 「유아교육법」상의 대상, 기관, 과정 등 제반 용어를 통일하여 실질적인 유보통합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(안 제2조제2호 등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임오경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3176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

정되어야 할 것임.

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“유치원”이란”을 ““영유아학교”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호 중 “교육과정”을 “보육교육과정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제2호 중 “유치원과 어린이집”을 “영유아학교와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유치원”을 각각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6조의 제목 “(유아교육진흥원)”을 “(보육교육진흥원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유치원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, “유아교육진흥원”을 “보육교육진흥원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유아교육진흥원”을 “보육교육진흥원”으로 한다.

제6조의2제1항, 같은 조 제4항 전단·후단, 같은 조 제6항제1호 및 제2호 중 “유치원”을 각각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2장의 제목 중 “유치원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7조의 제목 중 “유치원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유치원은”을 “영유아학교는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호 중 “유치원”을 각각 “영유아학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공립유치원”을 “공립영유아학교”로, “유치원(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

유치원으로”를 “영유아학교(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영유아학교와 도립영유아학교로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유치원”을 각각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8조의 제목 중 “유치원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유치원을”을 “영유아학교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사립유치원을”을 “사립영유아학교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“유치원”을 각각 “영유아학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유치원을”을 각각 “영유아학교를”로 한다.

제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유치원을”을 “영유아학교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7호 중 “유치원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8조의3제1항 전단 중 “유치원을”을 “영유아학교를”로 한다.

제9조의 제목 중 “유치원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하고, 같은 조 중 “유치원은”을 “영유아학교는”으로 한다.

제9조의2의 제목 중 “유치원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유치원을”을 “영유아학교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유치원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10조의 제목 “(유치원규칙)”을 “(영유아학교규칙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유치원의”를 “영유아학교의”로, “유치원을”을 각각 “영유아학교를”로, “유치원규칙”을 “영유아학교규칙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유치원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유치원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

중 “유치원”을 각각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유치원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유치원은”을 “영유아학교는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유치원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13조의 제목 중 “교육과정”을 “보육교육과정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유치원은”을 “영유아학교는”으로, “교육과정”을 각각 “보육교육과정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교육과정”을 각각 “보육교육과정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유치원의 교육과정”을 “영유아학교의 보육교육과정”으로 한다.

제14조의 제목 “유치원생활기록”을 “영유아학교생활기록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1항 중 “유치원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유치원에서”를 “영유아학교에서”로, “교육과정”을 “보육교육과정”으로, “유치원과의”를 “영유아학교와의”로 한다.

제16조의 제목 “(외국인유치원)”을 “(외국인영유아학교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“(외국인유치원)이란”을 ““(외국인영유아학교)란”으로, “유치원을”을 “영유아학교를”로, “외국인유치원에”를 “외국인영유아학교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외국인유치원”을 “외국인영유아학교”로, “교육과정”을 “보육교육과정”으로 한다.

제17조제3항 중 “유치원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 중 “유치원”을 각각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18조제1항 중 “국립유치원은”을 “국립영유아학교는”으로, “사립유치원은”을 “사립영유아학교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유치원 교육과정”을 “영유아학교 보육교육과정”으로 한다.

제19조제1항 중 “유치원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19조의2의 제목 중 “유아교육정보시스템”을 “보육교육정보시스템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유치원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, “유아교육정보시스템”을 “보육교육정보시스템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유치원은”을 “영유아학교는”으로 한다.

제19조의3의 제목 중 “유치원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“유치원 운영의”를 “영유아학교 운영의”로, “유치원에 유치원 운영위원회”를 “영유아학교에 영유아학교운영위원회”로 하며, 같은 항 단서 중 “사립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”를 “사립영유아학교는 영유아학교운영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유치원에 두는 유치원 운영위원회”를 “영유아학교운영위원회”로, “유치원의”를 “영유아학교의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“유치원운영위원회”를 각각 “영유아학교운영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”를 “영유아학교운영위원회”로, “유치원의”를 “영유아학교의”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“유치원의”를 “영유아학교의”로, “유치원운영위원회”를 “영유아학교운영위원회”로, “유치원을”을 “영유아학교를”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“유치원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7항 중 “유치원운영위원회”를 “영유아학교운영위원회”로 한

다.

제19조의4의 제목 중 “유치원운영위원회”를 “영유아학교운영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유치원에”를 “영유아학교에”로, “유치원운영위원회”를 “영유아학교운영위원회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“유치원”을 각각 “영유아학교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유치원 교육과정”을 “영유아학교 보육교육과정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5호 및 제7호 중 “유치원”을 각각 “영유아학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사립유치원”을 “사립영유아학교”로, “유치원운영위원회”를 “영유아학교운영위원회”로 한다.

제19조의5의 제목 중 “유치원운영위원회”를 “영유아학교운영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유치원운영위원회”를 각각 “영유아학교운영위원회”로, “국립유치원”을 “국립영유아학교”로, “공립유치원”을 “공립영유아학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사립유치원”을 “사립영유아학교”로, “유치원운영위원회”를 “영유아학교운영위원회”로, “유치원규칙”을 “영유아학교규칙”으로 한다.

제19조의6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“유치원운영위원회”를 각각 “영유아학교운영위원회”로 한다.

제19조의7의 제목 중 “유치원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유치원에 유치원”을 “영유아학교에 영유아학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유치원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유치원회계는 유치원”을 “영유아학교회계는 영유아학교”로

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유치원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유치원의”를 “영유아학교의”로, “유치원회계”를 “영유아학교회계로”, “유치원을”을 “영유아학교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 중 “유치원회계”를 “영유아학교회계”로, “국립유치원”을 “국립영유아학교”로, “공립유치원”을 “공립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19조의8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“유치원”을 각각 “영유아학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유치원회계세입세출예산안”을 “영유아학교회계세입세출예산안”으로, “유치원운영위원회”를 “영유아학교운영위원회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치원”을 “영유아학교운영위원회는 영유아학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“유치원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유치원운영위원회”를 “영유아학교운영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“유치원회계”를 “영유아학교회계”로, “국립유치원”을 “국립영유아학교”로, “공립유치원”을 “공립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20조제1항 중 “유치원”을 각각 “영유아학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유치원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유치원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21조제1항 중 “유치원”을 각각 “영유아학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유치원”을 각각 “영유아학교”로 하며, 같은 항 단서 중 “유치원은”을 “영유아학교는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유치원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유치원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21조의2제1항 중 “유치원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21조의3제1항 중 “유치원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21조의4제3항 중 “유치원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21조의5 중 “유치원과”를 “영유아학교와”로 한다.

제23조제1항 전단 중 “유치원에는 교육과정”을 “영유아학교에는 보육 교육과정”으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“유치원은”을 각각 “영유아학교는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유치원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24조의 제목 “(무상교육)”을 “(무상보육교육)”으로 한다.

제25조의 제목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·후단 및 같은 항 제1호 중 “유치원”을 각각 “영유아학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유치원은 유치원”을 “영유아학교는 영유아학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국립유치원은”을 “국립영유아학교는”으로, “사립유치원은”을 “사립영유아학교는”으로, “유치원 원비”를 “영유아학교 원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유치원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26조제3항 중 “유치원”을 각각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27조 중 “유치원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중 “유치원”을 각각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28조의2의 제목 중 “유치원 명칭”을 “영유아학교 명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중 “유치원이 아니면 유치원”을 “영유아학교가 아니면 영유아학교”로 하며,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영유아학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30조제1항 중 “유치원의”를 “영유아학교의”로, “국립유치원”을 “국립영유아학교”로, “유치원인”을 “영유아학교인”으로, “유치원이”를 “영유아학교가”로, “교육과정”을 “보육교육과정”으로, “유치원 원비”를 “영유아학교 원비”로, “유치원규칙”을 “영유아학교규칙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유치원”을 각각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30조의2제1항 본문 중 “유치원의”를 “영유아학교의”로, “유치원과의”를 “영유아학교와의”로 한다.

제31조제4항 중 “유치원은”을 각각 “영유아학교는”으로, “유치원에서”를 “영유아학교에서”로, “유치원의”를 “영유아학교의”로 한다.

제32조의 제목 중 “유치원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유치원이”를 “영유아학교가”로, “교육과정”을 “보육교육과정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교육과정”을 “보육교육과정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유치원 설립인가”를 “영유아학교 설립인가”로, “유치원 또는”을 “영유아학교 또는”으로, “유치원을”을 “영유아학교를”로 하며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유치원이”를 “영유아학교가”로, “유치원의”를 “영유아학교의”로 한다.

다만,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라 설치·운영되는 영유아학교는 예외로 한다.

제33조제2항 중 “유치원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34조제2항제1호 중 “유치원 설립인가”를 “영유아학교 설립인가”로,

“유치원을”을 “영유아학교를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유치원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35조제1항 중 “유치원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치원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은 이 법에 따른 영유아학교로 본다.

제3조(유치원운영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영유아학교운영위원회로 본다.

제4조(유아교육진흥원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유아교육진흥원은 이 법에 따른 보육교육진흥원으로 본다.

제5조(유아교육정보시스템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은 이 법에 따른 보육교육정보시스템으로 본다.

제6조(교육과정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은 이 법에 따른 보육교육과정으로 본다.

제7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12·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

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1호 중 “「유아교육법」 제7조 각 호의 유치원을”을 “「유아교육법」 제7조 각 호의 영유아학교를”로 한다.

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1조제2항 중 “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”을 “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33조의4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「유아교육법」 제19조의2에 따른 보육교육정보시스템

③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의4제3항 중 “「유아교육법」 제13조”를 “「유아교육법」 제13조에 따른 보육교육과정”으로 한다.

④ 결핵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항제4호 중 “「유아교육법」 제7조에 따른 유치원”을 “「유아교육법」 제7조에 따른 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1항제1호 중 “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”을 “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유아학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“「유아교육법」 제16조에 따른 외국인유치원”을 “「유아교육법」 제16조에 따른 외국인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⑥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5조제3항 중 “유치원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유치원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51조의2의 제목 중 “유치원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하고, 같은 조 중 “유치원 교사”를 “영유아학교 교사”로, “유치원을”을 “영유아학교를”로 한다.

⑦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”을 “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⑧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항제1호 중 “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의 유치원”을 “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의 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의 유치원”을 “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의 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유치원운영위원회”를 “영유아학교운영위원회”로 한다.

제32조제1항제5호 중 “유치원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⑨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5호 중 “「유아교육법」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”을 “「유아교육법」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5조의2의 제목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·후단,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“유치원”을 각각 “영유아학교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유치원 교육과정”을 “영유아학교 보육교육과정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·제5호 및 제7호 중 “유치원”을 각각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⑩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가목 중 “유치원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10조의3제1항제1호 중 “유치원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⑪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”을 “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유아학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나목 중 “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”을 “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유아학교를”로, “확보한 유치원”을 “확보한 영유아학교”로, “사립유치원을”을 “사립영유아학교를”로 한다.

제6조제4항제1호 중 “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”을 “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8조제4항제3호 중 “유치원이나”를 “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유아학교나”로 한다.

제9조제18호·제19호·제21호·제24호 및 제25호 중 “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”을 각각 “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⑫ 구장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”을 “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⑬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제2호 중 “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”을 “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⑭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6항제1호 중 “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”을 “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⑮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1조제1항 중 “「유아교육법」 제16조에 따른 외국인유치원”을 “「유아교육법」 제16조에 따른 외국인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42조제1항제1호 중 “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”을 “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⑯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의2제5항제2호 중 “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의 유치원”을 “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의 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의 제목,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“유치원”을 각각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⑱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4항 중 “「유아교육법」 제7조에 따른 유치원”을 “「유아교육법」 제7조에 따른 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⑲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3호가목 중 “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”을 “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12조제1항제1호 중 “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유치원”을 “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영유아학교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유치원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⑳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“유치원·어린이집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.

2. 영유아학교: 「유아교육법」 제19조의3 또는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5조에 따른 영유아학교운영위원회

제68조제9호 중 “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”을 “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②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1항 중 “유치원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”을 “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②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2호 중 “유치원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③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가목 중 “유치원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「유아교육법」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”을 “「유아교육법」 제19조의2에 따른 보육교육정보시스템”으로 한다.

④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가목 중 “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과”를 “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영유아학교와”로 한다.

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2항제9호 중 “유치원”을 각각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35조제1항제10호 중 “유치원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②⑥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유치원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유치원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②⑦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제2항 중 “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”을 “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②⑧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8호 중 “유치원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②⑨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1호 중 “유치원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14조제1항 단서 중 “유치원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21조제3항제1호 중 “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”을 “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29조제4항제3호 본문 중 “유치원:”을 “영유아학교:”로, “유치원운영위원회”를 “영유아학교운영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호 단서 중 “유치원운영위원회”를 “영유아학교운영위원회”로 한다.

제3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유치원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35조제3항제1호마목 중 “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”을 “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53조의4제1항 중 “유치원과”를 “영유아학교와”로 한다.

제62조제1항 단서 중 “사립유치원”을 “사립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70조의5제1항 단서 중 “사립유치원”을 “사립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③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6항 중 “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”을 “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③⑪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1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4항제5호 중 “「유아교육법」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”을 각각 “「유아교육법」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③⑫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0조제1항제21호 본문 중 “유치원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③⑬ 석면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「유아교육법」 제7조에 따른 유치원”을 “「유아교육법」 제7조에 따른 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③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「유아교육법」 제7조에 따른 유치원”을 “「유아교육법」 제7조에 따른 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③⑤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“어린이집·유치원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유치원”을 “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③⑥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제2항제1호 중 “유치원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41조제3호 중 “유치원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50조제5항제2호 중 “유치원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51조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“유치원”을 각각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5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8항제1호 중 “유치원”을 각각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57조제4항제1호 중 “유치원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③⑦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의2제1항 중 “유치원”을 각각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28조의2제3항제2호의3 중 “유치원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29조의3제1항제8호 중 “유치원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“「유아교육법」에

다른 유치원의 원장”을 각각 “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영유아학교의 원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”을 “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영유아학교의 원장”으로 한다.

제32조제1항제4호 중 “유치원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③⑧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제13호 중 “유치원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③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1항제2호 중 “유치원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④⑩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가목 중 “유치원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④①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호나목 중 “유치원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16조의2제4항 중 “「유아교육법」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”을 “「유아교육법」 제19조의2에 따른 보육교육정보시스템”으로 한다.

④②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3항 중 “유치원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④③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호 중 “유치원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④④ 이러닝(전자학습)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

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7호 중 “유치원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④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1항 전단 중 “유치원(이하 “유치원”이라 한다)”을 “영유아학교(이하 이 조에서 “영유아학교”라 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유치원”을 각각 “영유아학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유치원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유치원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“유치원은”을 “영유아학교는”으로 한다.

④⑥ 인성교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가목 중 “유치원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④⑦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제4호 중 “유치원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22조제2항 중 “유치원을”을 “영유아학교를”로 한다.

④⑧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0호 및 제12호 중 “유치원”을 각각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유치원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18조제2항 중 “유치원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19조제2항 단서 중 “유치원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20조제1항 중 “유치원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유치원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26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“유치원”을 각각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27조제1항제1호 중 “유치원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④⑨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의 제목 중 “유치원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하고, 같은 조 중 “유치원을”을 “영유아학교를”로 한다.

⑤⑩ 전기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1항제8호 중 “유치원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<51>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6조제2항제1호 중 “유치원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223조제2항 중 “유치원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228조제4항 단서 중 “유치원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352조제2항 중 “유치원과”를 “영유아학교와”로 한다.

<52>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1항제1호 중 “유치원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<53>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제1항제1호 중 “유치원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<54>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4조제3항 중 “「유아교육법」 제13조”를 “「유아교육법」 제13조에 따른 보육교육과정”으로 한다.

제54조제2항제2호 중 “유치원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<55>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제2항제1호 중 “유치원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35조제1호 중 “유치원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<56>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의 제목 중 “어린이집 및 유치원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 및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(이하 이 조에서 “유치원등”이라 한다)”을 “「영유아보육법」 및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영유아학교(이하 이 조에서 “영유아학교”라 한다)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“유치원등”을 각각 “영유아학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유치원등으로”를 “영유아학교로”로 한다.

<57>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제3항제8호 중 “유아교육정보시스템”을 “보육교육정보시스템”으로 한다.

<58>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5조제2항제3호 중 “유치원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<59> 평생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의2제1항 중 “유치원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26조제2항 중 “유치원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<60>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호 본문 중 “유치원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하고, 같은 호 단서 중 “유치원은”을 “영유아학교는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단서 중 “유치원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유치원”을 각각 “영유아학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유치원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15조제1항 본문 중 “유치원운영위원회”를 “영유아학교운영위원회”로 한다.

<61>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가목 중 “국립유치원”을 “국립영유아학교”로 하고, 같은 호 나목 중 “공립유치원”을 “공립영유아학교”로, “사립유치원”을 “사립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9조의2제1항 전단 중 “유치원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유치원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유치원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<62>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가목 중 “유치원(이하 “유치원”이라 한다)”을 “영유아학교(이하 “영유아학교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<63>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유치원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14조제1항 중 “유치원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유치원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<64>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항 중 “유치원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<65>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 중 “유치원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<66>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가목 중 “유치원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제1호 중 “유치원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8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(조례를 포함한다)에서 종전의 「유아교육법」의 용어 및 규정을 인용한 경우로서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용어 및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용어 및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용어 및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 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“유치원”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 · 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.	2. “ <u>영유아학교</u> ”란----- ----- -----.
3. ~ 5. (생 략)	3. ~ 5. (현행과 같음)
6. “방과후 과정”이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<u>교육과정</u>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.	6. ----- ----- <u>보육교육과정</u> ----- ----- -----.
제4조(유아교육 · 보육위원회) ① 유아교육 및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에 따른 보육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유아교육 · 보육위원회를 둔다.	제4조(유아교육 · 보육위원회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<u>유치원과 어린이집간의 연계 운영</u>	2. <u>영유아학교와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영유아학교</u> ----- -----
3. · 4. (생 략)	3. · 4. (현행과 같음)
② · ③ (생 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제5조(유아교육위원회) ① (생략)

② 중앙유아교육위원회와 시·도 유아교육위원회는 유아교육 전문가, 유치원대표, 유치원교사(수석교사를 포함한다)대표, 학부모대표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.

③ (생략)

제6조(유아교육진흥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,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, 유치원교원 연수 및 평가, 유아 체험교육 등을 담당하는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교육관련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·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6조의2(교육통계조사 등) ① 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유아교육 연구에 필요한 원생·교원·직원

제5조(유아교육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영유아학교-----영유아학교-----
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6조(보육교육진흥원) ① -----

-----영유아학교-----

-----보육교육진흥원-----

-----.

② -----보육교육진흥원-----

-----.

제6조의2(교육통계조사 등) ① -----

-----영

· 유치원 · 교육행정기관 등에
대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
교육통계조사를 매년 실시하고
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.

② · ③ (생략)

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위하여 관할 유치원 및 교육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관할 유치원 및 교육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, 교육감은 관할 유치원 및 교육행정기관 등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⑤ (생략)

⑥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, 이를 제5항에 따라 연계를 요청받은 기관에 통계조사 및 분석, 검증 등을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.

유아학교-----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④ _____
 _____영유아
 학교_____

-----영유아학교-----

-----영유아학교-----

⑤ (현행과 같음)

⑥

1. 조사대상 유치원 및 교육행정기관의 교원·직원

2. 조사대상 유치원의 유아 및 졸업생

⑦ ~ ⑨ (생략)

제2장 유치원의 설립 등

제7조(유치원의 구분) 유치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 국립유치원 : 국가가 설립·경영하는 유치원

2. 공립유치원 : 지방자치단체가 설립·경영하는 유치원(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)

3. 사립유치원 : 법인 또는 사인(私人)이 설립·경영하는 유치원

제8조(유치원의 설립 등) ①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·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.

②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

1. -----영유아학교-----

2. -----영유아학교-----

⑦ ~ ⑨ (현행과 같음)

제2장 영유아학교의 설립 등

제7조(영유아학교의 구분) 영유아학교는-----
-----.

1. ----영유아학교-----
-----영유아학교

2. 공립영유아학교-----
-----영유아학교(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영유아학교와 도립영유아학교로-----

3. ----영유아학교-----
-----영유아학교

제8조(영유아학교의 설립 등) ① 영유아학교를-----

-----.

② 사립영유아학교를-----

한다.

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치원 설립을 인가하여야 한다.

1. 2. (생략)

3. 제3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운영정지 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유치원 설립·경영자인 경우

4. (생략)

④ 사립유치원을 설립·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
제8조의2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치원을 설립·운영할 수 없다.

1. ~ 6. (생략)

7. 제32조에 따라 유치원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-----.

③ -----

-----영유아학
교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

-----영유아학
교-----

4. (현행과 같음)

④ ----영유아학교를-----
-----영유아학교를-----

-----.

제8조의2(결격사유) -----

-----영유아학교를-----
-----.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7. -----영유아학교-----

8.·9. (생 략)

제8조의3(교육명령) ① 교육부장관은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이 제8조의2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유치원을 설립·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사전에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도록 명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교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한다.

② (생 략)

제9조(유치원의 병설) 유치원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·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될 수 있다.

제9조의2(유치원의 설립의무)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의 경우에는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유아배치계획을 고려하여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에 유치원을 병

8.·9. (현행과 같음)

제8조의3(교육명령) ① -----

-----영유아학
교를-----

-----.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9조(영유아학교의 병설) 영유아학교는-----

-----.

제9조의2(영유아학교의 설립의무)
① -----

-----영유아학교

설하거나 별도로 설립하여야 한다.

1. ~ 5. (생 략)

② 교육감은 제9조에 따라 병설된 유치원의 학급 증설이 필요한 경우 이를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.

제10조(유치원규칙) ① 유치원의 장(유치원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. 이하 “원장”이라 한다)은 법령의 범위에서 유치원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.

② 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 및 제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1조(입학) ①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유아로 한다.

② 원장은 교육 목적에 적합한 범위에서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유치원에 입학할 유

를-----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영유아학교-----

-----.

제10조(영유아학교규칙) ① 영유아학교의-----영유아학교를--
-----영유아
학교를-----

-----영유아학교
규칙-----
-----.

② 영유아학교-----

--.

제11조(입학) ① 영유아학교-----

-----.

② -----
-----영유아학교-----

-----영유아학교---

아를 모집·선발하여야 한다.
다만, 제3항에 따른 조례에서
모집·선발 시기 등을 달리 정
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.

③ (생 략)

제12조(학년도 등) ① 유치원의
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
2월 말일까지로 한다.

② 유치원은 보호자의 요구 및
지역실정에 따라 방과후 과정
을 운영할 수 있다.

③ 유치원의 학기·수업일수·
학급편성·휴업일 및 반의 편
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
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3조(교육과정 등) ① 유치원은
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며,
교육과정 운영 이후에는 방과
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.

②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
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
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
며,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가
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

-----.
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2조(학년도 등) ① 영유아학교

-----.

② 영유아학교는-----

-----.

③ 영유아학교-----

-----.

제13조(보육교육과정 등) ① 영유
아학교는-보육교육과정-----
-----보육교육과정-----

-----.

② -----
-----보육교육과정-----

-----보육교육과정-----

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.

③ (생 략)

④ 교육부장관은 유치원의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.

제14조(유치원생활기록) (생 략)

제15조(특수학교 등) ① 특수학교는 신체적·정신적·지적 장애 등으로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에게 유치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·기능 및 사회 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가 유치원에서 교육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따로 입학절차·교육과정 등을 마련하는 등 유치원과의 통합교육 실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16조(외국인유치원) ① “외국인유치원”이란 국내에 체류중인
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영유아학교의 보육교육과정-----
-----.

제14조(영유아학교생활기록)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
제15조(특수학교 등) ① -----

-----영유아학교-----

-----.

② -----
-----영유아학교에서-----
-----보육교육과정-----
-----영유아학교와의-----
-----.

제16조(외국인영유아학교) ① “외국인영유아학교”란-----

외국인의 자녀를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유치원을 말하며, 외국인유치원에 대하여는 제11조제1항·제2항 단서·제3항,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, 제17조, 제18조제2항, 제19조,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8까지, 제22조,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② 외국인유치원의 설립기준·교육과정·수업연한·학력인정과 그 밖에 설립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7조(건강검진 및 급식) ①·② (생략)

③ 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해당 유치원의 유아에게 적합한 급식을 할 수 있다.

④ (생략)

제17조의2(유아 관련 자료제공의 제한) ① 원장은 제14조에 따른 유치원생활기록 및 제17조에 따른 건강검진에 관한 자료를 해당 유아의 보호자의 동의

-----영유아학교를-----

외국인영유아학교에-----

---.

② 외국인영유아학교-----

보육교육과정-----

---.

제17조(건강검진 및 급식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영유아학교-----
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제17조의2(유아 관련 자료제공의 제한) ① -----

---영유아학교-----

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
아니 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
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유치원에 대한 감독·검사의
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그
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
한 경우

2. ~ 5. (생략)

②·③ (생략)

제18조(지도·감독) ① 국립유치
원은 교육부장관의 지도·감독
을 받으며, 공립·사립유치원은
교육감의 지도·감독을 받는다.

② 교육감은 유아교육을 충실
히 하기 위하여 유치원 교육과
정 운영에 대한 장학지도를 할
수 있다.

제19조(평가) ① 교육감은 유아교
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
필요하면 유치원 운영실태 등
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.

② ~ ④ (생략)

제19조의2(유아교육정보시스템의
구축·운영 등) ① 교육부장관

-----.

-----.

1. 영유아학교-----

2. ~ 5. (현행과 같음)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18조(지도·감독) ① 국립영유
아학교는-----

-----사립영유
아학교는-----
-----.

② -----
-----영유아학교 보
육교육과정-----
-----.

제19조(평가) ① -----

-----영유아학교-----
-----.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19조의2(보육교육정보시스템의
구축·운영 등) ① -----

및 교육감은 유치원 및 교육행
정기관의 업무(회계관리를 포
함한다)를 전자적으로 처리할
수 있도록 유아교육정보시스템
(이하 “정보시스템”이라 한다)
을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~ ④ (생략)

⑤ 유치원은 회계관리 업무를
위하여 정보시스템을 사용하
여 한다.

제19조의3(유치원운영위원회의
설치 등) ① 유치원 운영의 자
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
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
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
기 위하여 유치원에 유치원운
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. 다만,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
만의 사립유치원은 유치원운영
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
위원회는 해당 유치원의 교원
대표 및 학부모 대표로 구성한
다.

③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

-----영유아학교-----

-----보육교육정보시스템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 영유아학교는-----

제19조의3(영유아학교운영위원회의
설치 등) ① 영유아학교 운
영의-----

-----영유아학교에 영유아
학교운영위원회-----.

-----사립영유아학교는 영유아
학교운영위원회-----

② 영유아학교운영위원회-----

---영유아학교의-----

③ -----
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.

④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.

⑤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5명 이상 11명 이내의 범위에서 유치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⑥ 제9조에 따라 병설된 유치원의 경우에는 필요하면 유치원운영위원회를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는 유치원 교원 대표 및 학부모 대표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
⑦ 제1항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.

제19조의4(유치원운영위원회의

-----영유아학교운영위원회-----
-----.

④ 영유아학교운영위원회-----

-----.

⑤ 영유아학교운영위원회-----

-----영유아학교의-----
-----.

⑥ -----영유아학교의-----
-----영유아학교운영위원회-----
-----영유아학교를-----
-----.

⑦ -----영유아학교운영위원회-----
-----.

제19조의4(영유아학교운영위원회

기능) ① 국립·공립 유치원에
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는 다음
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유치원규칙의 개정에 관한
사항
2.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
사항
3.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
에 관한 사항
- 3의2. ~ 4. (생략)
5.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

6. (생략)
7.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
건의에 관한 사항
8. ~ 10. (생략)

② 사립유치원의 장은 제1항
각 호의 사항(제8호 및 제9호
는 제외한다)에 대하여 유치원
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
한다.

제19조의5(유치원운영위원회의
구성·운영) ① 제19조의3에
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 중 국
립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
원회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

의 기능) ① -----영유아
학교에-----영유아학교운영
위원회-----
-----.

1. 영유아학교-----

2. 영유아학교-----

3. 영유아학교 보육교육과정---

- 3의2. ~ 4. (현행과 같음)
5. 영유아학교-----

6. (현행과 같음)
7. 영유아학교-----

8. ~ 10. (현행과 같음)

② 사립영유아학교-----

-----영유
아학교운영위원회-----
-----.

제19조의5(영유아학교운영위원회
의 구성·운영) ① -----
-----영유아학교운영위원회-
---국립영유아학교-----영
유아학교운영위원회-----

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
공립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
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 범위에서 시·도의 조례로 정
 한다.

② 사립유치원에 두는 유치원
 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
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
 고,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
 항은 정관 또는 유치원규칙으
 로 정한다.

제19조의6(유치원운영위원회 위
 원의 연수 등) ① 교육감은 유
 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질과
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한
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~ ④ (생략)

제19조의7(유치원회계의 설치) ①
 국립·공립 유치원에 유치원회
 계를 설치한다.

② 유치원회계는 다음 각 호의
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.

1. ~ 7. (생략)

③ 유치원회계는 유치원의 운
 영 및 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

 -----공립영유아학교-----
 -----영유아학교운영위원회-----

 -----.

② 사립영유아학교-----영
 유아학교운영위원회-----

 -----영유아
 학교규칙-----.

제19조의6(영유아학교운영위원회
 위원의 연수 등) ① -----
영유아학교운영위원회-----

 -----.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19조의7(영유아학교회계의 설
 치) ① -----영유아학교
 에 영유아학교-----.

② 영유아학교-----
 -----.

1. ~ 7. (현행과 같음)

③ 영유아학교회계는 영유아학
 교-----

필요한 모든 경비를 세출로 한다.

④ 유치원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.

⑤ 제9조에 따라 병설된 유치원의 경우에는 필요하면 유치원회계를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학교회계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⑥ 유치원회계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,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시·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제19조의8(유치원회계의 운영) ① 유치원회계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종료한다.

② 원장은 회계연도마다 유치원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

-----.

④ 영유아학교-----

-----.

⑤ -----영유아학교의-----
-----영유아학교회계-----
-----영유아학교를-----
-----.

⑥ 영유아학교회계-----
-----국립영유아학교-----
-----공립영유아학교-----
-----.

제19조의8(영유아학교회계의 운영) ① 영유아학교-----

-----.

② -----영유아학교회계세입세출예산안-----

-----영

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치원 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심의하여야 한다.

④ 원장은 제3항에 따른 예산안이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. 이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.

1. 2. (생략)

3. 유치원 시설의 유지관리비

4. 5. (생략)

⑤ 원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유치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⑥ 유치원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유치원의 경우

유아학교운영위원회-----
-----.

③ 영유아학교운영위원회는 영유아학교-----
-----.

④ -----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영유아학교-----
--

4. 5.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

-----영유아학교운영위원회-----.

⑥ 영유아학교회계-----
-----국립영유아학교-----

에는 교육부령으로,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시·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제20조(교직원의 구분) ① 유치원에는 교원으로 원장·원감·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되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에는 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유치원에는 교원외에 계약의사, 영양사,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,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.

③ 유치원에 두는 교원과 직원(이하 “교직원”이라 한다)의 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배치기준은 제18조에 따른 지도·감독 기관이 정하며,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21조(교직원의 임무) ① 원장은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고 민원처리를 책임지며, 소속 교직원을 지도·감독하고 해당 유치

-----공
립영유아학교-----
-----.

제20조(교직원의 구분) ① 영유아
학교-----

-----영유아학교-----
-----.

② 영유아학교-----

-----.

③ 영유아학교-----

-----.

제21조(교직원의 임무) ① -----
-----영유아학교-----

원의 유아를 교육한다.

② 원감은 원장을 보좌하여 유치원 업무를 관리하고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하며,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 다만, 원감을 두지 아니하는 유치원은 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(수석교사를 포함한다)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(생략)

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한다.

⑤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.

제21조의2(유아의 인권 보장) ① 유치원의 설립자·경영자와 원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유아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제21조의3(원장 등 교원의 유아

영유아학교-----.

② -----영유아학교-----

---영유아학교-----

-----.

-----영유아학교

는-----
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-----영유아학교-----

-----.

⑤ -----

-----영유아학

교-----

-----.

제21조의2(유아의 인권 보장) ①

영유아학교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21조의3(원장 등 교원의 유아

생활지도) ① 원장 등 교원은 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.

② (생 략)

제21조의4(보호자의 의무 등) ①

· ② (생 략)

③ 보호자는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의 범위에서 교원과 유치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
제21조의5(교원 개인정보의 보호)

유치원과 원장은 교원의 전화번호,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및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23조(강사 등) ① 유치원에는

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외에

생활지도) ① -----

-----영

유아학교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21조의4(보호자의 의무 등) ①

· 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영유아

학교-----

-----.

제21조의5(교원 개인정보의 보호)

영유아학교와-----

-----.

제23조(강사 등) ① 영유아학교에

는 보육교육과정-----

② 제1항에 따라 유치원에 두는 강사 등의 종류·자격기준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5조(유치원 원비) ① 유치원의
설립·경영자는 교육부령으로
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등의
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(이
하 “유치원 원비”라 한다)을 받
을 수 있다. 이 경우 다음 각
호의 기준에 따라 유치원 원비
를 달리 정할 수 있다.

영

유아학교는

② ----- 영유아학교 -----

-----.

제25조(영유아학교 원비) ① 영유아학교-----

1. -----영유아
학교-----

2. 3. (생 략)

② (생 략)

③ 각 유치원은 유치원 원비의
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
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게
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
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교육
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
하는 국립유치원은 제5조제1항
에 따른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
심의를,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
에 해당하는 공·사립유치원은
같은 항에 따른 시·도 유아교
육위원회의 심의를 각각 거쳐
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
가상승률을 초과하여 유치원
원비를 받을 수 있다.

1. 2. (생 략)

⑤ 그 밖에 유치원 원비 산정
및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
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.

제26조(비용의 부담 등) ①·②
(생 략)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

2. 3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영유아학교는 영유아학
교-----

~.

④ -----

---국립영유아학교는-----

-----사립영유아
학교는-----

-----영
유아학교 원비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영유아학교-----

-----.

제26조(비용의 부담 등) ①·②
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<u>사립유치원</u>의 설립 및 <u>유치원</u> 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한다.	----- ----<u>영유아학교</u>-----<u>영</u> <u>유아학교</u>----- ----- -----.
제27조(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)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 거나 제12조제3항에 따라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<u>유치원</u>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	제27조(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영유아학교</u>----- ----- ----- -----.
제28조(보조금 등의 반환) ① 국 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·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 환을 명할 수 있다. 1. <u>유치원</u> 목적외에 보조금·지 원금을 사용한 경우 2. 3. (생략) 4. <u>유치원</u> 원비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 승률을 초과한 경우	제28조(보조금 등의 반환) ① 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<u>영유아학교</u>----- ----- 2. 3. (현행과 같음) 4. <u>영유아학교</u>----- ----- -----

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치원의 정원감축, 학급감축 또는 유아모집 정지나 해당 유치원에 대한 차등적인 재정지원 또는 재정지원 배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30조의2(위반사실의 공표) ① 관할청은 제28조제1항,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그 위반행위, 처분 내용, 해당 유치원의 명칭 및 그 밖에 다른 유치원과의 구별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제28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여 공표한다.

②·③ (생략)

제31조(휴업 및 휴원 명령) ① ~ ③ (생략)
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휴업된 유치원은 휴업기간중 해당

-----영유아학교-----

-----영유아학교-----

-----.

제30조의2(위반사실의 공표) ① -

-----영유아학교의-----
-----영유아학교와의-----
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31조(휴업 및 휴원 명령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-----
---영유아학교는-----

유치원에서 교육받는 유아의
등교와 교육이 정지되며, 제3항
에 따라 휴원된 유치원은 휴원
기간중 단순한 관리업무 외에
유치원의 모든 기능이 정지된
다.

제32조(유치원의 폐쇄 등) ① 관
할청은 유치원이 다음 각 호의
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상적
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
경우에는 1년 이내의 운영정지
를 명하거나 폐쇄를 명할 수
있다.

1. ~ 2의3. (생 략)

3. 휴업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
여 3개월 이상 교육과정을 운
영하지 아니한 경우

② 관할청은 제8조제2항에 따
른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지 아
니하고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
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유치원
을 운영한 자에 대하여 그 시
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.

<단서 신설>

----영유아학교에서-----

-----영유
아학교는-----
-----영유아학교의---
-----.

제32조(영유아학교의 폐쇄 등) ①
-----영유아학교가-----

-----보육교육과정-----

-----.

1. ~ 2의3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
-----보육교육과정-

② -----
--영유아학교 설립인가-----
-----영유아학교 또는--

-영유아학교를-----

-----, 다만, 「영유아보육
법」에 따라 설치·운영되는
영유아학교는 예외로 한다.

③ 관할청은 유치원이 「도로교통법」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(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)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(승하차를 포함한다)한 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 유치원의 폐쇄를 명하거나 1년 이내의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.

제33조(청문) ① (생략)

② 관할청은 제32조에 따라 유치원 또는 시설의 폐쇄나 운영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

제34조(벌칙) ① (생략)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제8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

③ -----영유아학교가-----

-----영유아학교의-----

제33조(청문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영유아학교-----

제34조(벌칙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1. -----영유아학

<u>설립인가</u>를 받지 아니하고 <u>유치원</u>을 운영한 자 2. (생략) 3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<u>유치원</u>의 <u>설립인가</u> · 폐쇄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자 4. (생략) ③ (생략) 제35조(과태료) ①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<u>유치원</u>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② · ③ (생략)	<u>교 설립인가</u>----- --<u>영유아학교</u>를----- 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----- -----<u>영유아학교</u>----- ----- 4.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 제35조(과태료) ① ----- -----<u>영유아학교</u>----- ----- ----- -----.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--	--